

I. 질 의 응 답

1. 비영리법인도 다시 등록을 해야 하나
2. 재단법인도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이 가능한지
3. 등록할 수 없는 단체·법인은(예시)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는 「○○상담소」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상이 되는지
5.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내용은
6. 법 제10조에서 등록단체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7. 등록신청을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게 하는 이유
8.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9.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해당 시·도에 별도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가능한지
10. 중앙행정기관은 어느 기관을 말하는지
11. 사무소의 정의
12. 사무소의 설치·운영 여부 확인은
13. 주된 사무소 변경시 등록청에 변경신청하여야 하는지
14. 법령에 비영리민간단체의 동일명칭에 대한 사항은 없는데 안전행정부에 동일명칭 조회를 해야 하는지
15. 회칙이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의결권 위임의 효력여부
16. 회칙이나 정관에 총회 기능 및 의결사항이 없는 경우(이사회나 운영위원의 기능이나 의결사항만 있는 경우)
17.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일 것'에 대한 유권해석

18. 시·도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을 할 때 그 단체의 회원은 반드시 같은 시·도내 주민이어야 하나
19. 외국인도 회원이나 대표자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20.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미성년자가 비영리민간단체의 회원이 된 경우 이를 상시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유권해석)
21. 금고이상의 형 선고 범죄전력 또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임원의 자격박탈이 가능한지 여부
22. 법 제2조제5호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인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에 대해 공익활동실적은
23.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할 경우 시·도 사무소도 최근의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나
24. 회원별 공익활동 실적을 단체의 공익활동실적으로 인정가능 여부
25. 단체명이 상이한 공익활동실적의 인정가능 여부
26.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기 위해 단체에서 수익사업 활동이 가능한지
27. 교육비 또는 참가비를 받고 실시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28.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
29.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려면
30. 등록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한 등록절차를 거치게 한 이유
31. 변경등록 시에 새로운 등록번호를 사용하는지
3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취소, 철회는 가능한가
33. 등록제외 대상인 비영리민간단체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34. 단체의 정관에서 총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성립조건
35. 법인의 경우 회원명부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는 이유
36.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체 기금사업에 대하여 등록청이 감사할 수 있나

◆ 질의응답 사례 《등록의 의의와 효과》

문 1) 비영리법인도 다시 등록을 해야 하나?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는 (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동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동 법에서 등록의 의의는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요건(공익성, 공익사업 수행능력 등)을 확인하는 행정행위이며,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설립 허가는 비영리단체(사단 또는 재단)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이 두 가지는 그 목적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행정행위임

문 2) 재단법인도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이 가능한지?

- 재단법인은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사단법인과는 달리 재산을 구성요소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록요건 중 하나인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법 제2조제4호)을 갖추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 ‘구성원’ 관련 요건 등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등록이 가능하며, ‘구성원’ 관련 요건 충족여부 확인은 재단의 정관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재단의 공익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구성원(회원)이 100인 이상인지를 회원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함

문 3) 등록할 수 없는 단체·법인은(예시)?

- 정당, 조합, 종교단체(교회·절 등), 친목단체(향우회·동창회) 등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등록요건 중
 -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됨

문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는「○○상담소」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상이 되는지?

- 원칙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등록이 가능함
- 다만, 해당 단체가 보조금 교부사업 이외에 다른 공익활동(공익사업)을 추진하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독립적인 단체인 경우에 등록 가능

문 5)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내용은?

- 보조금사업 참여 : 매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
- 우편요금 감면 :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에 의하여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받을 수 있음(영 제11조)
- 조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개별법규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야 감면 가능(법 제10조)
- 행정기관에 협력요청 : 지원사업 수행시 당해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협조 요청할 수 있음(영 제13조②)

문 6) 법 제10조에서 등록단체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0조의 조세감면 규정은 근거규정만 둔 것이며 실제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여야 함
- 따라서, 등록된 민간단체 모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조세감면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개별 법규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야 감면이 가능함

◆ 질의응답 사례 《등록청》

문 7) 등록신청을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게 하는 이유?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단체의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는 이유는 다양한 단체가 그 단체의 목적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성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함임

문 8)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 단체의 사업범위가 2 이상 시·도에 해당되는 광역적인 활동이어야 하며, 2 이상의 시·도에 별도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등록청의 관할(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을 구분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임

문 9)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해당 시·도에 별도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가능한지?

- 단체의 지부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지부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
- 이는 단체의 지부가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임. 통상, 단체의 지부가 본부의 사업을 지역적으로 분장하는 경우, 지역 회원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 계획에 의한 독자적인 활동을 추진하는 등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임

문 10) 중앙행정기관은 어느 기관을 말하는지?

-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부·처·청과 개별 법령에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된 기관을 말하나, 정부조직도(청와대홈페이지 등 참조)에 명시된 기관을 참고하면 쉽게 알 수 있음

◆ 질의응답 사례 《사무소 및 단체의 명칭》

문 11) 사무소의 정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로 정해진 공간으로, 단체 활동의 중심이며 회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소'로 인정 가능하나 다음 각 호의 건물은 인정하지 않음
 - ①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 ②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 ③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문 12) 사무소의 설치·운영 여부 확인은?

- 사무소(주된 사무소, 지부 사무소)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체명의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단체명의로 계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 개인명의(단체대표, 지부장, 회원 등)로 계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인의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등
 - 공공기관 건물 임차 : 사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

문 13) 주된 사무소 변경시 등록청에 변경신청하여야 하는지?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3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괄호 안에 “시·도를 달리한 경우를 말한다”고 단서를 달고 있음.
따라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시·도를 달리하여 변경한 경우,
 - ① 중앙행정기관 등록 단체는 변경등록의 철자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고,
 - ② 시·도 등록 단체는 종전 등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규)등록해야함

- 시·도를 달리하지 아니하는 주된 사무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비록 법령에 정한 변경등록의 의무는 없으나, 보조금 사업 응모 등을 위하여 사무소의 주소를 현행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행정절차는 변경등록의 절차(등록증 재교부, 등록대장 정리, 안전행정부 통보 등)를 따르되,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는 절차는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각 등록청에서는 등록증 교부시점 등을 활용,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면 (동일 시·도 내의 소재지 변경을 포함) 변경등록 등을 신청하도록 안내

문 14) 법령에 비영리민간단체의 동일명칭에 대한 사항은 없는데 안전행정부에 동일명칭 조회를 해야 하는지?

- 동일명칭 사용에 대하여 규제사항은 없지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10조(조세감면), 제11조(우편요금의 지원) 등 관련, 착오나 혼란의 방지 등을 위하여 동일명칭 조회가 필요함

◆ 질의응답 사례 《구성원(회원) 등》

문 15) 회칙이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의결권 위임의 효력여부?

- 총회 등에서의 ‘의결’은 단체의 중요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이므로, 정관이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의결권의 위임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문 16) 회칙이나 정관에 총회 기능 및 의결사항이 없는 경우(이사회나 운영위원의 기능이나 의결사항만 있는 경우)?

- 총회는 단체의 구성원(회원)이 단체의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의결기구이므로 회칙이나 정관에 그 기능이 명시될 필요가 있으며,
- 운영위원회나 이사회 등에 (통상적인) 총회의 기능을 위임한 경우에도 이사회 등의 구성(이사의 선임 등)에 구성원(회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함

문 17)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일 것'에 대한 유권해석

- 상시 구성원수라 함은 단체회칙(정관·규약 등)의 규정에 따라 회원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회원숫자를 말함
 - 단체를 조직하는 규약상 회원전부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고 회비만 내는 사람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해당단체의 외부적 '후원자'일 뿐 진정한 의미의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회원이라고 볼 수 없음
 - 동법중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위한 "상시구성원 100인 이상"의 요건은 국가 전체적으로 공익목적의 민간단체이기만 하면 과소한 인원들이 모인 단체까지 전부 지원할 수는 없고,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들이 모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어느 정도 운영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익적 운영의 위험이 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임

문 18) 시·도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을 할 때 그 단체의 회원은 반드시 같은 시·도 내 주민이어야 하나?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관련 구성원(회원)의 주소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시·도에 등록을 신청하는 단체의 회원이 반드시 동일 시·도의 주민일 필요는 없음
 - ※ 단체의 주된 공익활동범위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등록청 구분의 기준

문 19) 외국인도 회원이나 대표자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회원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외국인도 회원이나 대표자로 활동할 수 있음
- 다만, 소재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로 한정하므로 사무소는 국내에 설치되어야 할 것임

문 20)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미성년자가 비영리민간단체의 회원이 된 경우 이를 상시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유권해석)

- 공익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00.1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었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만큼 일정한 요건(법 제2조)을 구비하여 행정관청에 등록한 민간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라 하고 있음
 - * 보조금 지원(법 제6조), 조세감면(법 제10조), 우편요금 지원(법 제11조) 등
-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단순히 공익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활동 수행능력 구비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으로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구성원은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통상 매매계약 등 민-민간 법률행위의 유효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문 21)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범죄전력 또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 임원의 자격박탈이 가능한지 여부?

- 등록된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행정절차법(청산)에 의해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나,
- 임원의 자격 박탈 여부 등은 따로 규정된 바 없음. 따라서, 임원의 자격 박탈 등에 대하여는 단체의 정관 등에 따라 규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응답 사례 《공익활동실적》**

문 22) 법 제2조 제5호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인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실적이 있을 것’에 대해 공익활동실적은 ?

- 공익활동 실적이라 함은 단체의 예산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활동한 사업실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단체 명의로 실시한 공익활동의 실적을 말함
- 제출 자료는 총회 의결사항과 연계된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활동관련 사진, 언론보도 자료, 기타 유인물 등 사업의 공익적 성격과 구체적인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함
- ※ 실적 자료 진위여부 파악은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등), 언론보도 등 교차 확인

문 23)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할 경우 시·도 사무소도 최근의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나?

-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등록을 어디에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한 기준이며,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은 단체의 공익활동 수행역량 등을 판단하기 위한 ‘등록요건’임
- 이때, 공익활동 실적은 본부를 포함한 지부 등 단체 전체의 공익활동 실적을 의미하나, 본부 중심의 실적이 보다 중요하며, 기타 지부의 실적은 꼭 1년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문 24) 회원별 공익활동 실적을 단체의 공익활동실적으로 인정가능 여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5항에 의한 공익활동실적은 단체명으로 활동한 실적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원별로 개인 자격으로 실시한 공익 활동은 단체의 공익활동 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문 25) 단체명이 상이한 공익활동실적의 인정가능 여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중 하나인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에서, '공익활동 실적'은 등록을 신청한 단체의 명의로 활동한 실적을 말하며, 다른 명칭의 단체로 활동하다가 등록신청 전에 새로운 단체명을 정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종전 단체의 실적이 새로운 단체의 실적으로 바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다만, 종전 단체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총회의 의결 등)에 의하여 종전 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 실적을 등록신청 단체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문 26)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기 위해 단체에서 수익사업 활동이 가능한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서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은 수행할 수 없음
- 다만,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목적과 주된 공익사업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은 가능함

문 27) 교육비 또는 참가비를 받고 실시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익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단체의 설립목적과 주된 공익사업 등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하므로
- 교육비 또는 참가비를 받고 실시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그것이 단체의 설립목적과 주된 공익사업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며,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문 28)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

-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공익사업)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지역·집단·직업 등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누구나 공정한 조건과 기준에 의하여 사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함

◆ 질의응답 사례 《변경등록 및 말소·기타》

문 29)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려면?

- 시·도에 등록된 단체가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중앙행정기관 등록기준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시행령 제3조제1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된 시·도에 등록말소 신청을 한 후,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함

문 30) 등록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한 등록절차를 거치게 한 이유?

- 비영리민간단체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체의 조직 운영면에서 변동이 많다고 할 수 있으므로
-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때에 신규 등록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단체의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임

문 31) 변경등록 시에 새로운 등록번호를 사용하는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는 단체등록의 고유번호이므로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하여도 최초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함

문 3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취소, 철회는 가능한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는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으며, 이 때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거쳐야함
-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단체의 신청 또는 등록청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사항이며, '최소 또는 철회'하는 사항은 아님
- ※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에 대하여는 '취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은 신청인이 그 신청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행정청은 신청(서류)을 반려

문 33) 등록제외 대상인 비영리민간단체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등록요건을 재확인하여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등록말소 조치하고
- 등록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한 만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로 관리하여야 할 것임

문 34) 단체의 정관에서 총회의 의사결정족수 성립?

- 총회는 단체의 구성원(회원)이 단체의 중요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구로 「민법」 제75조에서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의 해석 : 과반수보다 강화된 규정을 말함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총회 결의방법 등에 대해 따로 규정한 바는 없으나, 제2조제4호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 중 하나로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을 규정하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구성원이 단체운영과 단체의 공익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단체의 의사결정과 운영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익적 운영 등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체의 총회 의결정족수는 재적인원의 과반 이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 의결정족수와 동일한 경우로 생략

문 35) 법인의 경우 회원명부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는 이유?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 중,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을 법인의 설립 허가나 연도결산 서류 등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나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 ※ 등록신청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등록한 법인으로 법인결산을 하지 않은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에 준하여 필요한 서류 제출
 - 타기관에서 법인설립허가를 한 경우에는 법인관련서류 확인이 어려우므로 신규등록과 동일한 서류를 접수하거나, 법인설립 주무관청에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요건의 적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또한, 중앙행정기관에서 허가받은 법인이라도 사무소가 1개인 경우에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에 등록하여야 함
 - ※ 법인의 사업목적과 활동범위에 따라 등록청을 구분하나 비영리민간단체는 활동범위와 사무소에 따라 등록청을 구분하고 있음

문 36)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체 기금사업에 대하여 등록청이 감사할 수 있나?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민법에 의해 허가받은 법인과는 달리 검사·감독 권한이 없고, 국고보조금 지원시 그에 대한 감독권한은 필요하나, 민간단체의 고유 기금의 집행분야에 대한 감사권한을 별개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는 단체는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그 등록청은 그 모집액에 대한 검사권한이 있으며, 1천만원 미만의 금액을 모집하는 단체의 등록 의무는 없으나 모집한 기금에 대한 횡령·유용시에는 형법상 처벌대상이 될 것임